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클라넷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13일

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6길 15-23

주식회사 에프에스티
대표이사 장 경 빈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